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 11. 23 선고 2021가단5128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대한민국

피고1. A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순호

변론 종결2022. 11. 9.

판결 선고2022. 11. 23.

주 문

1. 피고들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8. 체결된 증여계약은 174,302,2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87,151,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조세채권

1) C은 2011. 1. 1.부터 2016. 6. 30.까지 목포시 D 소재 사업장에서 사업자 미등록 상태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였다.

2) 목포세무서장은 2017. 3. 22.부터 2017. 4. 20.까지 C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C이 사업자 미등록 상태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였고 이에 대한 매출을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2017. 6. 1. C에게 아래와 같이 2011년 1기부터 2016년 1기까지 11건의 부가가치세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건의 종합소득세 합계 298,027,33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납부하도록 결정 고지하였다.

합계	298,027,330	428,112,840
부가가치세	2011.1기	2011.06.30.
부가가치세	2011.2기	2011.12.31.
부가가치세	2012.1기	2012.06.30.
부가가치세	2012.2기	2012.12.31.
부가가치세	2013.1기	2013.06.30.
부가가치세	2013.2기	2013.12.31.
부가가치세	2014.1기	2014.06.30.
부가가치세	2014.2기	2014.12.31.
부가가치세	2015.1기	2015.06.30.
부가가치세	2015.2기	2015.12.31.
부가가치세	2016.1기	2016.06.30.
종합소득세	2011	2011.12.31.
종합소득세	2012	2012.12.31.
종합소득세	2013	2013.12.31.
종합소득세	2014	2014.12.31.
종합소득세	2015	2015.12.31.

3) 위 조세채무와 관련하여 C은 2021. 3. 15. 현재 가산금 130,085,510원을 포함하여 합계 428,112,84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나. C의 처분행위

C은 2017. 3. 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딸들인 피고들에게 각 1/2씩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날,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7. 3. 30.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의 재산상태

1)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C의 적극재산으로는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 184,302,200원, ② 예금 합계 22,287,984원 총 합계 206,590,184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①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298,027,330원, ②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2010. 7. 12. 설정된 채권최고액 117,000,000원, 근저당권자 E조합의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 10,000,000원 합계 308,027,330원이 있었다.

2) 한편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7. 3. 30. 2017. 3. 28.자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를 C에서 피고 A로 변경하는 등기가 마쳐졌고, 2018. 8. 29. 채권최고액을 182,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등기가 마쳐졌다.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은 2017. 4. 17.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영암군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23, 을1-1,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상 원고가 정리보류(결손처분)를 할 때 사해행위 해당 여부 조사보고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7. 8. 18. C에 대하여 정리보류(결손처분)를 하였는데 그 결의서에는 C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그 전날 C의 모든 재산내역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C이 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원고는 늦어도 2017. 8. 18.에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목포세무서 소속 담당 세무공무원은 2017. 8. 18. C에 대한 결손처분을 결의하였는데, 결의서 조사자 의견에는 "C이 폐업자이며 무재산으로 체납처분 불가능하여 정리보류하고자 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사해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점, ②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체납처분담당자는 체납처분결과 1,000만 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하여 정리보류를 할 때에는 '사해행위 해당 여부 조사보고서'를 구비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의무사항으로 보이지는 않고 실제 위 보고서는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담당 세무공무원이 위 결손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C의 재산에 대한 전산자료 조회를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사실을 알았고, 그 후 위와 같은 결손처분 결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정까지 알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위 결손처분을 진행한 담당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는 것을 알았다면 곧바로 추적조사를 요청하거나 사해행위가 의심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점, ⑤ 담당 세무공무원의 위 결손처분은 체납자인 C에게 체납처분을 집행할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성 판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 ⑥ 목포세무서가 작성한 위 결손처분 결의서와 관련 서류를 살펴봐도, 그 담당 세무공무원이 위 결의서 작성 당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7. 3. 8.경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C의 유일한 재산이었는지, C의 재산이 채무초과 상태로 변동되었는지 등을 검토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⑦ 광주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공무원은 2020. 8. 4. 기획분석을 통해 C을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들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2017. 8. 18. 결손처분 당시 담당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광주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공무원이 C을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2020. 8. 4. 이전으로서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1년 전에 그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증거도 없다.

3)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는바(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및 제4호),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모두 과세기간이 끝나 이미 성립해있었고, 그 후 원고의 납세고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 및 그 가산금(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합계 428,112,840원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해 적극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실함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된다.

다.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2) 피고들은 선의라고 항변하나, 피고들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손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방식의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합계 174,302,200원(=184,302,200원-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 10,000,000원)이고,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428,112,840원이므로, 그중 적은 금액인 174,302,200원을 한도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돈을 피고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한 각 87,151,100원(=174,302,200원÷2)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윤화량

별지

1) 소장 청구취지 기재 "87,151,000원"은 "87,151,100원"의 계산상 오기로 보인다.